

거창군 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2011 ~
----------	--------

제출연월일	2011. 11. .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거창군 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천적 교육 및 지역의 과학 문화 확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거창군 천적생태과학관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사과테마파크 내
 다. 규 모 : 연면적 1,040㎡ (지하1층, 지상3층)
 ○ 천적전시시설 336㎡, 연구 및 사육시설 267㎡, 교육관 81㎡, 기타 356㎡
 라. 주요시설
 ○ 교육장(1층) : 친환경영농 천적활용 교육
 ○ 전시실(1층) : 천적의 이해, 천적의 종류, 천적의 관찰
 ○ 전시실(2층) : 천적의 활용, 한국의 천적곤충, 천적의 체험
 ○ 천적사육 및 연구실(3층) : 체험 및 교육용 천적곤충 연구 및 사육
 마. 위탁대상 업무
 ○ 시설운영 : 생태관내의 관련 시설물의 운영 및 콘텐츠 유지관리
 ○ 전시운영 : 천적 콘텐츠 전시물의 기획 및 전시, 유지보수
 ○ 곤충 종 사육 및 유지 : 전시용, 교육용 살아있는 곤충의 상시유지

바. 위탁기간 : 5년 이내 (최초 2년)
 사. 위탁운영 방식
 ○ 시설관리, 전시운영, 천적교육 일체 위탁
 ○ 천적과학관 운영수입 일체는 거창군 수입처리
 ○ 향후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추이 등을 감안 인력 조정 운영
 아. 소요예산
 ○ 연간 150,000천원(군비) 이내 편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 「과학관육성법」 제17조
 ○ 「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제4조 및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위탁운영)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예산 편성 및 2012년 예산 요구

거창군 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 계획

거창군 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역과학문화 확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천적관련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코자 함

거창군 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거창군 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 계획안)

I.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 「과학관육성법」 제17조
- 「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제4조 및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위탁운영)

II. 시설개요

- 위치 :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사과테마파크 부지 내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 358.32㎡ / 연면적 : 1,040.37㎡)
- 공간구성 : 전시실 336㎡, 교육장 81㎡, 연구실 95㎡, 기타 528㎡

시설내역	면적(㎡)	내 용	비고
천적전시실	336	기초천적, 응용천적 등 전시/체험시설	
연구/사육시설	267	체험 및 교육용 천적곤충 연구 및 사육	
천적교육관	81	친환경영농 천적활용 교육	
기타 부대시설	356.37	사무 공간 및 운영기계장비 등	
계	1,040.37		

Ⅲ. 위탁추진 계획

□ 위탁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 천적생태과학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간
- 수탁자의 관리 능력 및 운영성과 피드백에 따른 계약연장(5년 이내)
-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 위원장(부군수), 공무원(2인), 학계(2인), 민간(2인)

□ 위탁범위

- 시설운영 : 생태관내의 관련 시설물의 운영 및 콘텐츠 유지관리
- 전시운영 : 천적 콘텐츠 전시물의 기획 및 전시, 유지보수
- 곤충 종 사육 및 유지 : 전시용, 교육용 살아있는 곤충의 상시유지

□ 선정기준

- 곤충생태관의 운영을 위한 전문화 정도 및 수요자의 교육 요구에 대응 능력
- 전문성을 가미한 효율성 및 투자 기대의 효과성 제고
- 특화된 고품질 전시 도입 및 운영과 관리품질의 향상 도모 능력

Ⅳ.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구분	인원	주요업무	비고
업무총괄	1명	운영 및 관리, 업무총괄	상근, 천적관련 경력자
천적사육, 교육	1명	천적사육, 체험교육, 안내	상근, 천적사육 5년이상 경력자
전시안내, 교육	1명	전시안내, 체험교육	상근, 유아교육전공자
청소도우미	1명	과학관 청소	일용직, 주2회
도슨트	약 10명	전시안내, 체험안내	자원봉사 안내인, 격주 주말
자원봉사반	약 30명	청소, 특별전시 도우미	월 1회(중·고등학생)
천적탐구반	약 30명	천적탐구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농민
자문위원단	약 15명	운영 및 관리 자문, 체험강사	천적 및 관련분야 전문가

Ⅴ. 소요예산(예정가격)

(단위 : 만원)

구분	세부 구분	금액	산출 내역
1. 인건비	급여1	4500	375x12개월=4500
	급여2	2500	208.3x12개월=2500
	급여3	1700	141.6x12개월=1700
2.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391	32.6x12=391
	건강보험료	245	204.4x12=245
	장기요양보험	32	2.7x12=32
	산재보험	89	7.4x12=89
	고용보험	61	5.1x12=61
	퇴직연금	363	30.2x12=363
3. 보험료	화재보험	87	87
	배상책임보험	30	30
4. 제세공과금	전기세	1200	100x12=1200
	수도세	120	10x12=120
5. 시설관리비	과학관청소비	480	(5만x8회) x12월=480
	정화조청소비	12	년 1회 청소비
6. 일반관리비	전시관 소모품	700	
	사육실 소모품	850	
	교육훈련비	30	
	통신료	120	10x12=120
	사무용품비	10	
	도서인쇄비	200	
	업무추진비	30	
	천적사육 재료비	600	
특별전시	400	행사 1회, 축제 1회	
7. 기타	자문료	100	4x25=100(예비)
	강사료	150	5x30=150(예비)
총 계		15,000	

Ⅵ. 기대효과

- 지방과학문화시설 + (천적)곤충교육시설 + 체험 관광시설 운영
- 곤충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라 곤충교육 및 체험시설로 활용방안 확대
-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계획 연계

관계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10. 2. 4] [법률 제9992호, 2010. 2. 4,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과), 02-2100-6608~10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혁신함으로써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예수김)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④ 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 「과학관육성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76호, 2008. 3.21,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문화과), 02-2100-6630~34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과학관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12.30>

1. "과학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전문직원등 등록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라 함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과학기술지식의 보급을 위한 각종 경연, 실험·실습, 강좌·강연회, 영사회 및 체험·탐구·연구프로그램등을 말한다.

제3조(과학관의 구분) 과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6.12.30>

1. 국립과학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2. 공립과학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3. 사립과학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4. 삭제<1996.12.30>

제4조(적용범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제4조의2(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학관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과학관의 설립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육성지원시책과제 및 장·중·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과학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5. 기타 과학관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국내외의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등의 협력
6. 기타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6조(등록) ①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후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 2002.12.26>

②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2.12.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제2항 각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

경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8.2.29>

제6조의2(협의) ①국립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8.2.29>

②제1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7조(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등) ①시·도지사는 사립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을 얻은 설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998.12.28, 2002.12.26>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각호중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2002.12.26>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2.12.26>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의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2.12.26>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8.3, 1996.12.30, 2002.12.26, 2002.12.30, 2006.9.27, 2007.4.11, 2008.3.2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설립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3.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7. 삭제 <2002.12.26>

제9조 삭제<1998.12.28>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과학관은 관람료 기타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의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 2008.2.29>

제11조 삭제<1998.12.28>

제12조(등록의 취소) ①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2002.12.2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1998.12.28>
 5. 삭제 <1998.12.28>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② 삭제 <1998.12.28>
- ③ 삭제 <1998.12.28>

제13조(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2.12.26>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전문개정 1997.12.13]

제14조(폐관통보 <개정 1998.12.28>) ①등록과학관을 폐관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2.12.26, 2008.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과학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2.12.26>

제15조 삭제<1998.12.28>

제16조(지도·조언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관에 대하여 그 설립·운영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08.2.29>

②삭제<1998.12.28>

제17조(경비의 보조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과학관에 대하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영수송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 기타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모든 수송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수익사업) ①등록과학관은 과학관사업과 관련된 인쇄물·시청각자료·기념품등의 제작·판매 및 편익시설의 운영등 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수익사업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과학관의 목적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수익사업의 범위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2008.2.29>

제19조(후원회) ①등록과학관은 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당해 과학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③후원회가 후원금을 받거나 물품을 모집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 2008.2.29>

④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교환·양여등) ①과학관은 상호간에 과학기술자료를 교환·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과학기술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과학관협력망의 구성) ①정부는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과학기술자료의 정리·정보처리 및 그 시설등의 표준화
3. 종합목록·상호대차등 과학관 운영의 효율화
4. 기타 과학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②과학관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과학관협회) ①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과학관 운영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환, 과학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외국의 과학관과의 교류 기타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조례의 제정)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26]

제24조(통보) 시·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26]

□ 「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과학기술자료)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과학기술자료는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자료로 한다.

제3조(과학기술자료의 분류)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자료는 별표1과 같이 분류한다.

제3조의2(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절차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4.9,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본조신설 1997·5·9]

제4조(과학관의 기타 사업) 법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5·9>

1. 야외관찰학습지도
2. 전시기법의 연구·개발
3. 특별전시회의 개최
4. 표본제작의 실습지도
5. 산업현장실습지도
6. 과학공작 및 모형의 조립지도
7. 과학경연대회의 개최
8. 체험·탐구·연구프로그램 등의 개설·운영

제5조(등록요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전문직원의 자격)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전문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7·5·9, 1999.4.9>

1.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당해 과학기술자료의 관련직렬의 연구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자
2.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당해 과학기술자료의 관련직렬의 연구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당해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련학과(이하 "당해 과학관관련학과"라 한다)를 전공으로 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구기관·과학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과학기술자료에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할 경력(이하 "과학관등근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이상인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당해 과학관관련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자로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

제7조(등록절차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관등록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9, 1999.4.9, 2003.6.23, 2008.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과학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관의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9, 1999.4.9, 2003.6.23, 2008.2.29>

③법 제6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5·9>

1. 전문직원의 자격구비에 관한 사항
2.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이용료의 수입계획

제7조의2(협의)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립과학관의 설립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1. 사업계획서
2.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3. 과학기술자료내역서
4.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서류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3.6.23, 2008.2.29>

1. 과학기술자료의 전시를 위한 옥내·외 전시시설
2. 야외관찰학습을 위한 시설
3. 그밖에 과학관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세부 종류 및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3.6.23, 2008.2.29>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의과정에서 해당 국립과학관 설립·운영의 목적 및 예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6.23, 2008.2.29>

[본조신설 1997·5·9]

제8조(사립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신청 등) 법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립과학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3.6.23]

제9조(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변경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은 이미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사업시행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의 위치변경 및 10분의 1이하에 해당되는 면적의 변경
2. 6월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제10조(설립계획승인등의 협의) ①시·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2003.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1999.4.9>

제12조 삭제<1999.4.9>

제13조 삭제<1997·12·31>

제14조 삭제<1999.4.9>

제14조의2 (과학관의 등록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3.6.23>

1. 법 제6조제1항·제4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등록·변경등록 및 그 취소
2.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 및 그 취소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학관의 등록의 말소

[본조신설 1997·5·9]

제14조의3 삭제<1999.4.9>

제15조(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학관의 후원회는 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후원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당 등록과학관에 금품 또는 학술자료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원은 과학관의 사업중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등록과학관장은 후원회원에게 과학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등록과학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로부터 금품 또는 학술자료등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으로 구분하되, 중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과학관이 된다.<개정 1997.5.9, 2003.6.23>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4.9, 2008.2.29>

제17조 삭제<1999.4.9>

□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5호, 200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7>

제2조(등록신청서류등) ① 「과학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1997.5.30, 2005.11.17>

②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4.26, 1997.5.30>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내역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직원명단 1부 및 전문직원의 이력서 각 1부(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중 해당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삭제<1999.12.3>
7. 연간예산수지계획서 1부

8. 삭제<1999.12.3>

9.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1부

제3조(변경등록)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2006.7.14>

[전문개정 1999.12.3]

제4조 (과학관등록증의 서식등) 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한 때 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7, 2003.7.1>

제5조(과학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등)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및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개정 1997.5.30>

②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5.30, 2005.11.17, 2006.7.14>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1부
4.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서 1부
5. 삭제 <2006.7.14>
6.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부
7. 삭제 <2006.7.14>
8. 위치도 1부
9. 개략설계도서 1부

10. 과학기술자료목록 및 과학기술자료내역서 각 1부

③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설립계획승인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로 한다. <개정 1997.5.30, 2006.7.14>

④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또는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부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1부

제6조 삭제<1999.4.17>

제7조(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개정 1995.4.26>)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5.4.26, 1997.5.30>

제8조(폐관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관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폐관사유·폐관연월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전문개정 1999.4.17]

제9조 삭제<1999.4.17>

제10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과학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5.30>

1. 간행물의 제작·판매
2. 전시품·기념품의 제작·판매
3. 실험기자재의 제작·판매
4. 시청각용 비디오테이프 및 필름의 제작·판매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운영

6. 전기·전자·기계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운영

7. 수영장시설의 설치·운영

8. 매점등 편익시설의 설치·운영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학관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부지안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1999.4.17>

[별표] <개정 2008.12.31>

국·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제7조 관련)

1. 관람료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 (30명 이상)	
어른	4천원	3천원	20세~64세
청소년	2천원	1천5백원	13세~19세
어린이	2천원	1천5백원	7세~12세
노인	2천원	1천5백원	65세 이상
장애인	2천원	1천5백원	
국가유공자	2천원	1천5백원	

2. 자료이용료

구분	수량	금액
사진 및 비디오 촬영	1회	2만원
사진원판이용	1매	2천원

비고: 국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국립과학관장이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8. 5] [법률 제10019호, 2010. 2. 4, 제정]
농림수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500-1650

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곤충 관련 사업 지원방안

- 8. 그 밖에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

충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곤충의 대량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 곤충의 위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위해성 평가결과 곤충의 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약용곤충 및 학습·애완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야생곤충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을 준수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곤충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

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곤충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폐기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곤충을 유통 또는 판매한 자

②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8. 5] [대통령령 제22325호, 2010. 8. 4,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의 사육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판매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판매업
3.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판매업
4.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장·생태원·체험학습장 등 조성업·운영업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곤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농가, 곤충의 생산업체·가공업체·유통업체·판매업체의 현황
2.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체·판매업체의 현황
3.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체·판매업체의 현황
4.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장·생태원·체험학습장 등의 현황
5. 곤충 관련 연구소 현황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⑤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수풍뎅이

가. 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

나. 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

다. 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

2. 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8.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6호, 2010. 8. 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의 범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2.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위해성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이하 “위해성 평가”라 한다)의 대상 곤충은 다음 각 호의 곤충으로 한다.

1. 사람이나 가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3. 생태환경을 교란·파괴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교란·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곤충

②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위해의 정도와 그 범위

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대한 피해의 정도와 그 범위

3. 생태환경을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정도와 그 범위

③ 위해성 평가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른 대상 곤충을 인지하는 경우
2. 곤충을 사육·유통하려는 자나 사육·유통하고 있는 자가 의뢰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뢰서를 받으면 위해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수풍뎅이

가. 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

나. 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

다. 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

2. 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

제6조(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업·생산업·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곤충의 사육업·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2.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

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7조(예방조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의 탈출방지용 이중 출입구 장치의 설치
2.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에 일반인에게 알리는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 표지의 설치
3.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곤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별표 1]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종류
천적곤충	긴털이리응애, 꼬마무당벌레, 사막이리응애, 진디혹파리, 무당벌레, 어비진디벌, 진디면충좀벌, 칠성풀잠자리붙이, 담배장님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가는빨다리응애, 굴파리좀벌, 쌀좀알벌, 갈색반날개, 배노랑금좀벌, 칠레이리응애, 콜레마진디벌, 온실가루이좀벌, 황온좀벌, 담배가루이좀벌, 지중헤이리응애, 오이이리응애, 미끌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배추나비고치벌, 참딱부리노린재, 예쁜가는배고치벌, 오리꽃등애, 꼬마남생이무당벌레, 팔라시스이리응애, 응애잡이혹파리, 민개알반날개, 싸리진디벌, 어리줄풀잠자리, 나팔이리응애, 명충알벌, 프루텔고치벌, 알깡충좀벌, 검정알벌,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화분매개곤충	뒤영벌류, 꿀벌류, 뿔가위벌류, 파리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환경정화곤충	등애등애류, 소똥구리류, 파리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식용·약용곤충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
학습·애완곤충	노린재류, 풍뎅이류, 개미류, 여치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수서곤충류, 귀뚜라미류, 꽃무지류, 메뚜기류, 물방개류, 매미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사료용 곤충	거저리류, 귀뚜라미류, 등애등애류, 파리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그 밖의 동물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거창군 조례 제2037호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적생태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한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천적생태체험을 통한 자연생태계 보호의식 고취
2. 천적에 관한 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3. 천적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4. 천적을 이용한 체험·탐구·교육프로그램 등의 개설·운영
5.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여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관람 및 이용하게 한다.

1. 매주 월요일
 2. 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과학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관람시간)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그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한다.
- ④ 당일 정수한 관람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4.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과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표본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9. 과학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하는 자
 10. 그 밖에 군수가 과학관의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일반관람자에게도 무료관람 또는 특별할인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입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학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음주 상태로 공중이나 전시물 및 시설물에 유해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
-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 3. 그 밖에 전시물 및 시설물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흡연·음주·취사 또는 쓰레기투기 행위
 -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 3.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 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 5.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 6.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자의 책임) 관람자가 고의나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과학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과학관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관부지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매점 등 편의시설
- 2. 전시품·기념품 판매점
- 3.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판매점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과학관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

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과학관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① 관람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과학관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1.7.6,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학관의 관람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비 고
	개인	단체 (20명 이상)	
어른	2천원	1천원	20세~64세
청소년	1천원	5백원	13세~19세
어린이	5백원	3백원	7세~12세

[별지 제1호서식]

관 랑 권

<p style="text-align: center;">관람권 원부</p> <p>일련번호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금 원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어 른</td><td>개인</td><td>명</td></tr> <tr><td></td><td>단체</td><td>명</td></tr> <tr><td>청소년</td><td>개인</td><td>명</td></tr> <tr><td></td><td>단체</td><td>명</td></tr> <tr><td>어린이</td><td>개인</td><td>명</td></tr> <tr><td></td><td>단체</td><td>명</td></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거창군수</p>	어 른	개인	명		단체	명	청소년	개인	명		단체	명	어린이	개인	명		단체	명	<p style="text-align: center;">관 랑 권</p> <p>일련번호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금 원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어 른</td><td>개인</td><td>명</td></tr> <tr><td></td><td>단체</td><td>명</td></tr> <tr><td>청소년</td><td>개인</td><td>명</td></tr> <tr><td></td><td>단체</td><td>명</td></tr> <tr><td>어린이</td><td>개인</td><td>명</td></tr> <tr><td></td><td>단체</td><td>명</td></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거창군수 ※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p>	어 른	개인	명		단체	명	청소년	개인	명		단체	명	어린이	개인	명		단체	명	<p>○ 앞면 : 과학관 전경사진 또는 기획전시 ○ 뒷면 : 안내도 또는 관람 유의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7 cm</p>
어 른	개인	명																																				
	단체	명																																				
청소년	개인	명																																				
	단체	명																																				
어린이	개인	명																																				
	단체	명																																				
어 른	개인	명																																				
	단체	명																																				
청소년	개인	명																																				
	단체	명																																				
어린이	개인	명																																				
	단체	명																																				
← 5cm →	← 5cm →	← 9.5cm →																																				

[별지 제2호서식]

관람료 일일 징수실적

결 재	담당자	주 사	과 장

년 월 일

구 분	관람권 판매번호	매 수	징수액	비 고
계				
개인	소 계			
	어 른			
	청소년			
단체	어린이			
	소 계			
	어 른			
	청소년			
무료	어린이			
	소 계			
	어린이 (6세 이하)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그 밖에 (공무 등)			